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06호

2023. 11. 1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567호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 2
- 삼척시 조례 제1568호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4
- 삼척시 조례 제1569호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9
- 삼척시 조례 제1570호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삼척시 조례 제1571호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 ----- 13

##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663호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 14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18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7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84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8
- 삼척시 공고 제2023-1852호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1
- 삼척시 공고 제2023-1861호 2023년 덩굴제거사업(2권역) 시행 공고 ----- 28

공 람									
--------	--	--	--	--	--	--	--	--	--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3년 11월 10일

삼척시 조례 제1567호

###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관리자는 명절 연휴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삼척시민에게 시설 우선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유리게스트하우스 이용료 (제7조제1항 관련)

## 1. 객실별 이용료(1박 기준)

구 분		기준인원	준성수기	성수기	극성수기	비수기
10명	주중	2명	6만원	6만원	9만원	6만원
	주말		8만원	8만원	11만원	8만원
17명	주중	2~4명	9만원	10만원	13만원	8만원
	주말		11만원	12만원	15만원	10만원
27명	주중	4~6명	15만원	16만원	19만원	14만원
	주말		17만원	18만원	21만원	16만원

## [비고]

- ▶ 추가 인원 최대 2인 / 인원 추가료 1인당 1만원 / 침구 추가료 1세트당 1만원
- ▶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패키지이용료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2. 기간 구분

구 분	준성수기	성수기	극성수기	비수기
기 간	4. 1. - 4. 30.	5. 1. - 7. 21.	7. 22. - 8. 14.	12. 1. - 3. 31.
		8. 15. - 11. 30.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3년 11월 10일

삼척시 조례 제1568호

###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

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또는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창업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4.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5.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 개발 및 보호 지원 사업

제7조(판로개척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
-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사업
- 3.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 4.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의 판매 또는 출하에 필요한 운반 물류비 지원 사업

제8조(교류활동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지원 사업
-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 3.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제9조(인력확보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
-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 3.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연구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판로개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4. 제8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
5. 제9조 각 호에 따른 인력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업, 유관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3년 11월 10일

삼척시 조례 제1569호

###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3년 11월 10일

삼척시 조례 제1570호

###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삼척시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을 “삼척시에 두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 위원은 주관 부서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을 “위원”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 3명 이상”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 ① 삼척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행할”을 “수행할”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으로, “지명한 자가”를 “지명한 위원이”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제1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회신과 서면심의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되”를 “하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결정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를 “위원 등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로 한다.

제11조 중 “심의, 결정한”을 “심의·결정한”으로, “별지 제86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도지명위원회”를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축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3년 11월 10일

삼척시 조례 제1571호

### 삼척시 축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

삼척시 축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삼척시장 박상수

2023년 11월 10일

삼척시 규칙 제663호

###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 단서 중 “시장”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개폐로 인하여 당해”를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운전원 정원 협의)”를 “(운전직 공무원 정원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전원”을 “운전직 공무원(이하 “운전직”이라 한다)”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운전원”을 “운전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명의이전”을 “명의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읍·면·동장”을 “읍장·면장·동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운전원”을 “운전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원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등 공무수행상 공무원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운전원”을 각각 “운전직”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차량 운전원”을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전원”을 각각 “운전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운전원”을 “운전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차량운전원은”을 “차량운전자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운전원 관리”를 “운전직 관리”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운전원 근무지침 및 처우개선)”을“(운전직 근무지침 및 처우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운전원”을 각각 “운전직”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원”을 “운전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전원”을 각각 “운전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운전원”을 각각 “운전직”으로 한다.

제30조 중 “운전원”을 “운전직”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운전원 교류)”를“(운전직 교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전원”을 “운전직”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당해기관의 운전원”을 “해당기관의 운전직”으로 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직접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23 - 185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10.

삼척시장

##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62-18 외 2건

총천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66-18, 366-2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62-18	20231110	신규부여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 활용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마달동 26-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마달길 97 (마달동)	20231110	신규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기존도로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천동 189-1, 43-1, 187-2, 187-12, 187-13, 189-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599 (갈천동)	20231110	신규부여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 (기존도로명)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uso.go.kr](http://www.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총천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삼척시 공고 제2023-1845호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3. 11. 6. ~ 2023. 11. 21.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3. 11. 21.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박영○
	주소 (대장상주소)	동막리 715번지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1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667 주1 1층, 연면적(140.16㎡), 철파이프조, 측사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06.

#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 의견제출서

<b>1. 예정된 처분의 제 목</b>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b>2. 당사자</b>	성 명	
	주 소	
<b>3. 의 견</b>		
<b>4. 기 타</b>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락처 : 033)570-3969

## 삼척시 공고 제2023-1852호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삼척시장

###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삼척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 범위(안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등(안 제5조)

라. 안전점검 및 보완, 안전관리요원 배치(안 제6조 및 제 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옥외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간이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8. “순간”이란 1시간을 의미한다.

제3조(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삼척시민은 시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관리·점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옥외행사 개최 7일전까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최·주관·후원, 보험가입여부, 순간 최대 관람 예정 인원과 수용능력, 주요내용 등)

2. 옥외행사장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배치 계획

4. 비상시 교통·응급·소방 대응방안,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관련기관에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관부서에 명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한 옥외행사

2.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3. 주최자·주관자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와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요원) 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최자 또는 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인 경우에도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
-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 3.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 4.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제8조(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 협력)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및 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조례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3-1861호

## 2023년 덩굴제거사업(2권역) 시행 공고

2023년 덩굴제거사업(2권역)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해당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삼척시청



1. 사업명 : 2023년 덩굴제거사업(2권역)
2. 사업기간 : 2023년 11월 ~ 12월
3. 사업내용 : 임목의 건전한 생장을 도모하고자 덩굴제거 작업을 실시
4. 사업대상지 : 삼척시 일원(붙임 대상지 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3.11.10. ~ 12.10.)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가. 공고기간 중 대상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 동의여부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서면 또는 구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위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행추진
7. 기타사항 : 사업면적 및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산림과(☎ 033-570-392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2023년 덩굴제거사업(2권역) 대상지 내역 1부. 끝.

## 2023년 덩굴제거사업(2권역) 사업대상지 내역

구분	산림소재지				지적 (ha)	사업면적 (ha)
	읍,면	동,리	산구분	지번		
	<b>총 계</b>			<b>32필지</b>	<b>70.60</b>	<b>30.00</b>
1	평전		산	31-1	0.93	0.90
2	평전		산	31-2	0.87	0.80
3	평전		산	49	0.66	0.65
4	평전		산	50	0.09	0.05
5	평전		산	51	0.97	0.90
6	평전		산	54-2	0.50	0.50
7	평전		산	55	0.66	0.65
8	평전		산	65-2	1.39	1.10
9	평전		산	66	0.91	0.80
10	성남		산	37-2	0.38	0.35
11	성남		산	37-3	0.38	0.35
12	성남		산	37-4	0.19	0.15
13	성남		산	37-10	0.38	0.30
14	성남		산	37-11	0.57	0.55
15	성남		산	37-50	0.26	0.20
16	사직		산	1-1	28.60	2.50
17	사직		산	47-5	0.94	0.30
18	사직		산	53-12	0.84	0.80
19	사직		산	53-14	1.39	1.35
20	사직		산	54	1.86	1.85
21	사직		산	55-3	1.10	1.10
22	사직		산	55-4	1.05	1.00
23	적노		산	92	7.26	2.50
24	적노		산	93	1.10	1.00
25	근덕	상맹방	산	138	1.21	0.80
26	근덕	상맹방	산	143	1.04	1.00
27	근덕	상맹방	산	144	0.09	0.05
28	근덕	상맹방	산	145	1.80	1.50
29	근덕	상맹방	산	145-1	1.80	1.80
30	근덕	상맹방	산	150	6.73	2.20
31	근덕	상맹방	산	151-2	2.47	0.70
32	근덕	상맹방	산	152-1	2.18	1.30